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단계별 출산 양육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)

○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.

○ 성주아기보험 지원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소 등록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로 한다.

나. 출산장려금 지원방법개선(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)

○ 자녀수에 관계없이 보건(지)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출산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○ 첫 임신 축하금 : 10만원 1회 지원

○ 출산 축하금 : 자녀수에 관계없이 30만원 1회 지원

○ 영아 양육지원금

- 첫째아 : 월 10만원 1년간 지원
- 둘째아 : 월 20만원 1년간 지원
- 셋째아 이상 : 월 30만원 1년간 지원
- 첫 돌맞이 축하금 : 20만원 1회 지원

○성주아기보험 : 1회 20만원 이내 지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○「저출산・고령사회 기본법」제4조 , 제8조, 제10조

○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8조

나. 예산사항 : 예산부서와 협의

5. 검토의견

□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음.**

□ **조례안 개정배경**

○ 통계청에서 발표한 **「2008 출생 통계 결과」**에 따르면 2007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6만6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70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.

○ 또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치인 **「합계출산율」**은 **1.12명**(2007년도 1.19명)으로 **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**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국가 중 **꼴지를 기록했음**.(미국2.12명, 영국 1.9명, 일본 1.37명)

○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,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출산장려대책을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○ 우리군도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적극대처하고 자녀의 출산・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함으로써

○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구축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생각되며, 각 조문을 검토 한 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됨.

□ 일반적으로 조례제정이나 조례를 전부(일부) 개정할 시 **마지막 조문에 “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”**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조문체계상 상례임.

□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시행규칙이 필요한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문이 없는데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